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평생교육사에 대한 보수(補修)교육 근거 마련〉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14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 1】 유사 국가전문자격 보수교육 과정	13
※ 【참고 2】 유사 국가전문자격 보수교육 현황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5.
3. 회부연월일 : 2025.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개인의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나아가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평생교육사는 전 생애에 걸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현장 전문인력으로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학습자가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현행법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평생교육사들의 연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의 미승인 및 연수 참여로 인한 불이익 우려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

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해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및 제4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신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u>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군·구평생학습관, 유치원 및 학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u> ② <u>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③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u>

현행	개정안
제46조(과태료)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평생교육사의 업무에 관하여 「평생교육법」 제24조제2항¹⁾은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평생교육사의 직무범위에 관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²⁾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하는 평생교육의 범위가 진로교육 등으로 확대되면서³⁾ 평생교육사의

1)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7조(직무범위)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역할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으로 평생교육사가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 및 교육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평생교육법」 제24조4)는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및 시·도진흥원장(연수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하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법」 제25조5)는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6.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이하 “**성인 진로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탐색·준비·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진로심리검사·진로상담·진로정보·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④ **평생교육사**의 등급,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연수)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진흥원장 및 시·도진흥원장**(이하 “연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5) 「평생교육법」 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1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 법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따라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등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는 연수의 종류, 연수 의무화 여부, 연수내용 및 시기 등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보수교육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연수와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보수교육과의 차이>

구 분	현행 「평생교육법」 상 연수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보수교육
지원방식	연수 의무화가 아님 실질적 연수 신청 및 참여제한	실질적 참여기회 부여
대상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전반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미포함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
실행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연수 실시 가능	대통령령으로 기관·단체 위탁 가능
강제성 여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 (선택적)	보수교육을 명할 수 있음
불이행 시 제제	없음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내용/시간 등	관련 규정 없음	대통령령으로 보수교육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등 규정

-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3.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연수기관
 4. 특별법 또는 정부출연으로 설립된 연수 및 교육훈련기관

개정안은 사회구조 및 직업구조 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사회구성원의 계속적인 배움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평생교육사도 사회복지사⁶⁾ 등과 같이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여타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입법례를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 대한 보수(補修)교육을 명할 수 있는 기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등”에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8조의 평생교육기관⁷⁾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공영역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강화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교육의 대상을

6)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평생교육법」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평생교육사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하여 보수교육의 대상을 「평생교육법」 제26조8)에 따라 배치 및 채용하는 평생교육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기준 : '23년 기준, 단위 : 개, 명, %)

기관유형		총 기관	구성 비율	평생교육사 배치기관	평생교육사	배치 비율
총계		5,145	100	4,467	6,698	100
공공 영역	시·군·구 평생학습관	499	10.0	406	954	17.7
	시·도평생교육진흥원	17		17	234	
	소 계	516		423	1,188	
민간 영역	초·중등학교부설	11	90.0	7	8	82.3
	대학 (원) 부설	417		342	628	
	사업장부설	365		353	481	
	언론기관부설	1,625		1,443	1,636	
	지식·인력개발형태	518		439	622	
	시민사회단체부설	405		342	485	
	원격형태	1,288		1,118	1,650	
	소 계	4,629		4,044	5,510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4)

둘째,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을 운영할 위탁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속한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이를 교육부령으로 수정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한 사례로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등도 소관 부처령으로 보수교육 및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인정하고 있음.

8) 「평생교육법」 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③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교육에 관한 입법례〉

「영유아보육법」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6. 보육교사의 인성함양(영유아의 인권보호 교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보수교육의 기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 단체 및 학교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고, 보고방법·보고주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에게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교육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개정안 제27조의2제1항의 “평생교육기관등”은 현행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3조, 제35조부터 제38조의 평생교육기관과 불일치하므로,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배치 및 채용하는 기관으로 보수교육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⁹⁾,

보수교육 위탁기관 및 대상, 기간, 방법,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교육 현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타 입법례와 같이 교육부령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 단체인 평생교육사협회는 교육부의 의견에 덧붙여, 평생교육사의 연수 참여 기회의 보장과 불이익 방지,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 제27조의2제1항의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9) 평생학습도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평생교육사 배치를 규정한 법령이 없어 해당 조문을 제외하고, 민간 평생학습시설의 종사자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개 정 안	정 부 수 정 안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6조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군·구평생학습관, 유치원 및 학교</u>(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u>대통령령</u>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u>으로 정한다.	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u>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치원, 학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군·구평생학습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u>(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u>교육부령</u>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u>교육부령</u>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93

【참고 1】 유사 국가전문자격 보수교육 과정

자격명	보수교육	
	관련조항	교육방법
평생교육사	없음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연간 12시간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기본법 제24조의2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20시간(2박3일) 합숙형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3년 (40시간)

【참고 2】 유사 국가전문자격 보수교육 현황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현황

(단위: 명)

연도	인원	1급	2급	3급
계	763,045	267,061	494,966	1,018
2022	91,734	31,383	60,312	39
2012~2022	671,311	235,678	434,654	979

자료: 2023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2023)

○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현황

(단위: 명)

연도	인원	1급	2급	3급
계	14,769	2,419	11,070	1,280
2022	2,730	604	1,943	183
2018~2022	12,039	1,815	9,127	1,097

자료: 청소년지도사종합정보시스템

○ 환경교육사 보수교육 현황

(단위: 명)

연도	인원	1급	2급	3급
계	535	-	70	465
2023	316	-	45	271
2022(국가자격)	219	-	25	194

자료: 환경보전원